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8. 23 선고 2022가단379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, 나연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14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21. 10. 14.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. 10. 14. 접수 제963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, 선택적으로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. 10. 14. 접수 제963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10872호로 16,733,271원 및 그 중 7,988,2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3. 14.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7. 4. 13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C의 부친 D의 소유이었는데, D이 2009. 3. 2.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로 처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.

다. 한편, 주식회사 F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19693호로 20,413,185원 및 그 중 9,365,87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. 9. 23.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, G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는 이후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.

라. 소외 회사는 2021. 5. 1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위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, 그에 따라 D의 처인 E 앞으로 3/9, 자녀인 피고, C, H 앞으로 각 2/9의 비율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고령인 E이 거주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고, 2021. 9. 30. 피고의 동거인인 J로부터 9,400,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1. 10. 1.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.

바. 이후 피고는 2021. 10. 1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라.항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. [인정 근거] 갑 1 내지 5호증, 을 1, 2, 5, 6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/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을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,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

취소되어야 하고, 또한 C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사건에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실질적으로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

피고는 망 D이 2009. 3. 2.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,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,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실제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하는데,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가 2021. 10. 1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/9 지분을 이전받기는 하였으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2009. 3. 2. 사망한 이후 12년 넘게 상속등기가 되지 않다가 C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2021. 5. 13. 강제집행을 위해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점, ② 소외 회사가 신청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연로한 D의 처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는데, 당시 피고가 원고와 같은 C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, ③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거인 J로부터 9,400,000원을 지급받고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는데,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에 비추어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/9 지분을

상회하는 금액인 점, ④ 결국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다.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 C의 질병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택순

부 동 산 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
[도로명주소]
강원도 삼척시
-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
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59.85㎡
-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대 3487㎡
대지권 종류 1. 소유권대지권
대지권비율 3938분의 72.9259

이 상

